

담양군의회 공고 제2025 - 10호

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3. 13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, 담양군의회 청렴 평가 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4조의2)

- 본회의 및 위원회 일정 기간 참석할 수 없는 출석정지를 포함하여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의 경우도 의정비 감액

나. 기타 띄어쓰기 및 자구 정비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5. 3. 13. ~ 3. 17.(5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5년 3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”를 “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”로, “따라·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(이하“의원”이라 한다)이 의정자료”를 “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이 의정 자료”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의정활동비 지급기준)”을 “(의정활동비 지급 기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”를 “의정활동비 중 의정 자료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지급기준표”를 “지급 기준표”로, “소속공무원”을 “소속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의 제목 “(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)”을 “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구속상태”를 “구속 상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3호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3호”로, “50퍼센트를 지급한다”를

“2분의 1을 감액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,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.

제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 지급하되,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여비지급)”을 “(여비 지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**담양군의회**(이하 “**의회**“라 한다)의 **회의**(이하“**본회의**”라 한다)”를 “**담양군의회 본회의**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**국내여비는 운임**(**철도운임, 선박운임, 항공운임, 자동차운임**), ·”를 “**국내 여비는 운임**(**철도 운임, 선박 운임, 항공 운임, 자동차 운임**),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**공무국외출장 등에 지급하는 국외 여비는 운임 (철도 운임, 선박 운임, 항공 운임, 자동차 운임), 일비, 숙박비, 식비, 준비금으로 구분한다.**

제7조의 제목 “(여비 지급기준)”을 “(여비 지급 기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**국내여비는 별표 2의 국내여비**”를 “**국내 여비는 별표 2의 국내 여비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**국외 여비는 별표 3의 국외 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.**

제7조의2의 제목 “(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)”를 “(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수령액을 환수(還收)하는”을 “수령액 환수(還收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출장신청”을 “출장 신청”으로, “지급받는”을 “받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환수금액은”을 “환수 금액은”으로, “환수금액의”를 “환수 금액의”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의회사무실 소재지 내 출장시 여비)”를 “(의회사무실 소재지 내 출장 시 여비)”로 하고,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의회사무실 소재지 내 출장 시 여비)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.

제9조 중 “관하여”를 “관해서”로 한다.

별표 1, 별표 2,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담양군의회 의원</u> <u>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</u> <u>여비지급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<u>따라</u> 담양군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 ① 담양군의회 의원(이하“의원”이라 한다)이 <u>의정자료</u> 수집 ·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. ② (생략) 제3조(<u>의정활동비 지급기준</u>) 의원에게 지급하는 <u>의정활동비</u>중 <u>의정자료</u> 수집 연구비는 월 1,200,000원을, 보조활동비는 월 300,000원을 지급한다. 제4조(월정수당 지급) ① (생략)	<u>담양군의회 의원</u> <u>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</u> <u>지급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 ① ----- -----(<u>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</u>)이 <u>의정 자료</u>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3조(<u>의정활동비 지급 기준</u>) ----- ----- <u>의정활동비</u> 중 <u>의정 자료</u> ----- ----- -----. 제4조(월정수당 지급) ① (현행과

② 월정수당은 별표 1의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에 따르며, 담양군 소속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

제4조의2(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)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속상태에 있는 경우 3개월 이내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40퍼센트, 3개월 이후는 20퍼센트를 지급한다. 다만, 의원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.

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. 다만, 각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5퍼센트를 지급한다.

같음)

② -----
-- 지급 기준표-----
-- 소속 공무원 -----
-----.

제4조의2(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) ① -----
구속 상태-----

-----.

-----.

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3호-----

--- 2분의 1을 감액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,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제5조(여비지급) 의원이 담양군의 회(이하 “의회“라 한다)의 회의(이하”본회의“라 한다)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

제6조(여비의 종류) ①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(철도운임, 선박운임, 항공운임, 자동차운임),
· 일비, 숙박비, 식비로 구분한다.

②공무국외 연수 등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 (철도운임, 선박운임, 항공운임, · 자동차운임), 일비, 숙박비, 식비, 준비금으로 구분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
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 지급하되, 이미 지급한 경우
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.

제5조(여비 지급) --- 담양군의회 본회의 -----

-----.

제6조(여비의 종류) ① -----

국내 여비는 운임(철도 운임, 선박 운임, 항공 운임, 자동차 운임), -----
--.

② 공무국외출장 등에 지급하는 국외 여비는 운임 (철도 운임, 선박 운임, 항공 운임, 자동차 운임), 일비, 숙박비, 식비, 준비금으로 구분한다.

제7조(여비 지급기준) ① 국내여비는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.

②국외여비는 별표 3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.

제7조의2(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) ① 의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(還收)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

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

2.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,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.

제8조(의회사무실 소재지 내 출장시 여비) ①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.

②제1항에서“의회사무실 소재

제7조(여비 지급 기준) ① 국내 여비는 별표 2의 국내 여비 -----.

② 국외 여비는 별표 3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.

제7조의2(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) ① -----수령액 환수(還收) -----.

② -----.

1. --- 출장 신청 -----받는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환수 금액은 -----환수 금액의 -----.

제8조(의회사무실 소재지 내 출장시 여비)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.

지 내에서의 출장”이란 담양군
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
km미만인 출장을 말한다.

제9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된
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
급에 관하여는 「담양군의회 지
방공무원 여비 조례」에 따른
다.

제9조(준용) -----

--- 관해서-----

--.

[별표 1]

월정수당 지급 기준표(제4조 관련)

구 분	금 액	비 고
2023년도	• 월 1,819,000원	
2024년도	• 2023년도의 월정수당에 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	
2025년도	• 2024년도의 월정수당에 202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	
2026년도	• 2025년도의 월정수당에 202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	

[별표 2]

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(제7조제1항 및 제8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일비 (1일당)	숙박비 (1박당)	식비 (1일당)
의원	실비	실비	실비	실비	20,000	실비	25,000

※ 비고

1.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 출장은 출장 여행 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일비만 지급해야 한다.
2.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내 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[별표 3]

국외 여비 지급 기준표(제7조제2항 관련)

(단위 : 미불화)

구 분	항 공 운 임	일 비	숙박비(1야) 및 식비(1일)			준비금		
			등급	숙박비	식비	15일 미만	15일 이상 30일 미만	30일 이상
의 장 부의장	실 비 (1등석)	35	가	166	107	150	170	195
			나	120	78			
			다	92	58			
			라	79	49			
의 원	실 비 (2등석)	30	가	145	81	130	155	180
			나	95	59			
			다	70	44			
			라	62	37			

※ 비고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기준은 공무원 국외 여비 지급 기준에 따른다.